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43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2. 9. 22.(목) 07: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43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07:30

□ 장 소 : 달개비 식당(중구 정동)

□ 재적이사 : 총 11명

□ 출석이사 : 총 8명

□ 출석감사 : 총 2명

사무국장이 제43회 임시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제43회 임시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보고
 3. 장학사업 추진 현황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244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44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8월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서울시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긴급 위기가구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서울희망SOS장학금의 2022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회의자료를 통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다.

- 서울희망대학장학금의 이중수혜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납 등 불용 예상액 150,000,000원을 수해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희망SOS장학금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초 3,092,909,000원의 예산을 2,942,909,000원으로 감액하고, 서울희망SOS장학금은 당초

277,500,000원에서 427,500,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증액된 서울희망SOS장학금 지원대상을 긴급복지지원 수혜가구, 수급자/차상위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집중호우 수혜가구를 추가하고, 지원인원은 당초 277명에서 427명으로 150명 확대하고, 장학금은 1인당 1,000,000원(1회)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서울희망대학장학금 불용예상액이 150,000,000원인지 묻다.

사무국장이 150,000,000원원 외에도 약 500,000,000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며, 10월 중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추가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서울희망SOS장학금의 추가 지원대상 기준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 기준인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생 선발공고에 반영하기를 주문하다.

이사장이 2022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45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45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2021년 내부 감사 결과, 사무위임전결규정 제5조(전결사항) 별표에서 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일상적인 업무 계획 수립·시행시, 전결 규정 없이 부장 전결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단위업무에 따라 전결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위임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다.

이사장이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46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246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서울시 평생교육국 조직 개편에 따라 제20조의 당연직 직무감사 직제를 교

육정책과장에서 교육지원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 현황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OOO 이사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시 당연직 이사·감사의 변경된 직제를 매년 정관에 반영해야 하는지 묻다.

사무국장이 직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당연직 이사·감사의 소속이 정관에 정확하게 기재 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정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6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이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9월 22일